

『홍익법학』 게재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칙

2006. 11. 01. 제정
2008. 01. 23. 개정
2010. 06. 16. 개정
2010. 12. 15. 개정
2012. 02. 08. 개정
2012. 10. 04. 개정
2013. 02. 14. 개정
2014. 03. 12. 개정
2015. 09. 16. 개정
2017. 08. 31. 개정
2018. 11. 26. 개정
2019. 02.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 7조 제2항에 따라 『홍익법학』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23.>

제2조(논문심사의 원칙) 논문의 심사는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10. 12. 15.>

제3조(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하여 전공, 소속기관, 연구업적, 외부 활동,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개정 2018. 11. 26.>

② 심사논문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개정 2008. 01. 23.><개정 2010. 12. 15.>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23.>

제3조의2(논문유사도검사)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를 한다. <신설 2017. 08. 31.>

제4조(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① 투고논문심사는 1차의 서류심사, 2차의 본심사, 3차의 재심사, 이의신청에 대해서 행하는 이의심사로 구분한다. <신설 2015. 09. 16.>

② 1차 서류심사는 투고기간을 지나서 신청했거나, 『홍익법학』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논문의 체제 중 제3호 내지 제7호의 요건 중 본문, 참고 문헌, 초록 등 일정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논문투고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본심사위원 1인을 선정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③ 2차 본심사에 있어서는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위원은 심사결

과와 그 이유를 별지서식1의 논문심사표에 적어서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 등은 아래한글 파일과 인장을 찍은 PDF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한다.<개정 2018. 11. 26.>

④ 심사평가서는 인비로 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 및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3.><개정 2010. 12. 15.>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수정 없이 게재' <개정 2012. 02. 08.><개정 2012. 10. 04.>
2. 간단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개정 2010. 12. 15.><개정 2012. 10. 04.>
3. 대폭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개정 2012. 02. 08.><개정 2012. 10. 04.>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유보' <개정 2012. 02. 08.><개정 2012. 10. 04.>

⑤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개정 2008. 01. 23.>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각주의 형식적 통일성 및 정확성
5. 참고문헌의 적절성 및 전문성
6. 연구결과의 기여도
7. 초록의 내용의 포괄성 및 적절성
8.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준수

⑥ 번역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개정 2008. 1. 23.>

1. 번역의 필요성
2. 번역의 정확성
3. 학문적 기여도
4.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준수 <신설 2010. 12. 15.>

⑦ 3차 재심사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논문에 대해서 실시하며, 투고자가 평가결과를 수정 및 가감하여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그 결과 홍익법학에 게재하여도 좋은지 여부를 심사하며, '게재가' 또는 '게재유보'로 판정한다. <개정 2018. 11. 26.>

⑧ 이의심사는 '게재유보' 판정에 대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실시하며,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 경우 부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18. 11. 26.>

제5조(본심사 판정) ① 편집위원회 편집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 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0. 12. 15.>

② 논문집 편집 분량의 이유로 부득이 게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순 으로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03. 12.>

제6조(심사판정 기준) ① 본심사에 있어서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심사위원의 점수(별지서식1 의 최종평가를 의미함)는 이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13. 02. 14><개정 2015. 09. 16.>

② 편집위원회는 3인의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면 '게재', 84점~75점이면 '수정 후 게재', 74점~60

점이면 ‘수정 후 재심사’, 59점 이하는 ‘게재 유보’로 평가한다. 재심사 결과에 관하여는 ‘게재가’, ‘차호 게재’, ‘게재 유보’ 중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권으로 게재 유보 결정을 할 수 있다. 게재 유보 결정은 투고자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가 있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3. 02. 14><개정 2019. 02. 15.>

1. 투고자가 홍익법학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2. 투고논문이 투고규정을 위반하였고 투고자가 그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투고자가 별지서식2의 논문연구윤리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사’(또는 게재유보) 의견을 낸 경우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와 ‘게재유보’가 각 1개 이상인 경우
6. 심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홍익법학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세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및 재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판정결과 및 이유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01. 23.><개정 2015. 09. 16.>

제8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 제출한다. <개정 2008. 01. 23.><개정 2010. 12. 15.><개정 2012. 02. 08.>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23.>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반드시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한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정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정 2012. 02. 08.><개정 2015. 09. 16.>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 ① 편집위원회는 이 최종원고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 연구 진실성의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0. 12. 15.><개정 2012. 02. 08.>

② 게재 확정된 논문이 전항의 검증절차에 의하여 연구윤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투고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당해 논문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5.><개정 2012. 02. 08.>

제10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홍익법학』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 01. 23.>

제11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권한) 이 세칙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개정 2018. 11. 26.>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8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